

(붙임1)

임금피크제 운영요령 제정(안)

□ 제 정 사 유

- 행정자치부 「임금피크제 도입 권고(안)」 이행
 -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-사 합의서 체결 (11/30)
-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인사, 보수 등 구체적인 내용 마련 필요
 - 2015년 제8차 임시이사회(12/28) 「인사규정」 및 「보수규정」 개정 후속 조치

□ 주요 제정내용

- [대상자] 일반직
- [적용시기] 정년퇴직일로부터 3년 전이 되는 날의 익일
- [인사발령] "별도직군" 전환을 위한 인사발령 실시
- [직급] 기존직급 반납 후 별도직군("임금피크제")으로 정원 내 관리
- [직위] 미부여 원칙, 다만 이사장의 필요에 의해 부여 가능
- [직무]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부여
- [호칭] "부장", 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
- [기본급] 1년차 95%, 2년차 90%, 3년차 85%
- [퇴직금] 전환시점 및 기간 중 중간정산 가능
- [별도정원]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에 대해 별도정원 운영

□ 시 행 일

- 이 요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